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30
------------	------

2020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송아량 의원 외 13인

나.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아량 의원)

가. 제안이유

- '20년 2월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출범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방송운영계정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관련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교통방송 재단출범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방송운영계정 관련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9조)
- 향후 교통방송계정이 삭제되어도 경과조치를 두어 잔여재원처리규정을 마련(안 부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29. ~ 2020. 11. 5.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가결<sup>1)</sup>

- 교통방송이 tbs 미디어 재단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 계리되어 관리되고 있던 ‘교통방송계정’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운영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의 ‘교통방송계정’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는 한편 계정의 집행잔액 등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2020년 2월 17일부터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운영하고 있음<sup>2)</sup>
- 그간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내에 ‘교통관리계정’, ‘교통개

---

2) 재단설립 경과

- '17.6.22. :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기획조정실-7572호)
- '18.7.3 :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심의
- '18.8.7~12.26 : 재단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 '19.1.31. : 조례재정계획 수립(교통정책과-1876)
- '19.7.18.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17 시행)

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외에 '교통방송계정'<sup>3)</sup>을 두어 별도로 세입과 세출을 운영·관리하였으나,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방송계정'을 계속 운영할 당위성이 없어져 계정 폐지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sup>4)</sup>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을 경우 조례의 폐지와 함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방송계정'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부칙 경과조치를 두어 향후 교통방송계정이 삭제되어도 잔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3) '21년 '교통방송계정'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편성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12,628	586	13,214	6,162	7,052

4)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p85(행정자치부, '15.12.)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관리하기”로 한다.

제4조 중 “ 및 교통방송계정”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방송운영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교통방송운영계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집행잔액 등 계정 잔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진출 또는 세입처리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관리하기</u> ----- ----- ----- -----</p>
<p>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 계정·교통개선분담금계정·주차장 관리계정 <del>및 교통방송계정</del>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 계정·교통개선분담금계정·주차장 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9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u>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광고방송 수입</u></li> <li>2.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li> <li>3. <u>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용자금</u></li> <li>4. <u>기채(기채: 공채모집) 및 차입금</u></li> <li>5. <u>교통방송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u></li> <li>6. <u>방송사업의 수입</u></li> </ol>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 입금</p> <p>② <u>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출은 다 음 각 호와 같다.</u></p> <p>1. <u>교통방송의 운영</u></p> <p>2. <u>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u></p> <p>3. <u>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행사의 수행 및 지원</u></p> <p>4. <u>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 관리 및 육성</u></p> <p>5. <u>기채·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u></p> <p>6. <u>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 발</u></p> <p>7. <u>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u></p> <p>8. <u>그 밖에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 업</u></p>	